

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도환동해본부 간 귀어학교 개설사업 위·수탁 협약서

2019년 귀어학교 개설 관련 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강원도환동해본부장(이하 “위탁자”라 한다)와 강릉원주대학교총장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대행사업 위·수탁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「2019 귀어학교 개설사업」 관련 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도환동해본부 간의 상호 업무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2019년 귀어학교 개설사업 시행지침」, 「해양수산물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, 「강원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사업규모 및 사업기간) ① 대행사업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해안로 1166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내 귀어학교 교육시설 리모델링, 교육 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대행사업 규모는 설계 결과 공사 현장여건, 귀어학교 운영 계획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③ 시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인·허가의 지연 등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 발생 시 변경할 수 있다.

제4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의 기간은 사업기간을 포함한 협약 체결된 날부터 사업비 정산 완료일까지로 한다.

제5조(업무의 범위) ① 위탁자는 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수탁자에게

위탁하고 수탁자는 제반업무를 시행한다.

② 위탁자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대행사업비의 조달 및 지급
2. 기타 수탁자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행정지원

③ 수탁자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
2. 설계용역에 필요한 각종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
3. 공사 및 기자재 구입 발주, 계약 및 대가 지급
4. 공사(기자재)관련 지도·감독 및 기성·준공 검사
5. 사업 관련 각종 인·허가 및 인증 업무
6. 기타 “위탁자”와 관련된 행정 업무 지원 등

제6조(대행사업비) 협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행사업비는 금1,000,000,000원(금십억원)으로 한다.

제7조(사업비 신청 및 지급) ① 수탁자는 사업비 신청서를 위탁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및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전체사업 집행일정, 사업내용, 예산집행계획, 성과목표 달성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후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사업비를 입금하여야 하며, 수탁자는 특별계정 및 계좌를 설치하고 타 계정 및 계좌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계규칙 및 정산) ① 위탁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소유한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,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지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를 감액중지하거나 기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관련 규정 또는 본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
2.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

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
 4. 사업비 정산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정산검사를 거부한 경우
 5. 그 밖에 위탁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수탁자는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(품의서, 계약서, 지출결의서, 금전출납부, 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 법령이 요구하는 자료)를 첨부한 정산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④ 위탁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수탁자는 정산검사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업의 성실 수행) 수탁자는 본 협약사무를 추진함에 있어, 본 협약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협약의 해지)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,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1. 천재·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
2. 부도·회생절차 신청 등 중대한 재정적 변화가 있는 경우
3. 귀책사유로 협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
4. 업무를 해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경우
5. 정당한 사유 없이 강원도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
6. 그 밖에 민법과 상법이 인정하는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11조(손해배상 등) ① 수탁자는 본 협약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(소송비용·변호사 비용 등 포함)을 지며,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위탁자에게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.

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었거나, 제3조의 협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교부한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해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12조(관련 규정) 본 협약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
2. 강원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3. 2019년 귀어학교 개설사업 시행지침
4. 그 밖에 본 협약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

제13조(업무처리) ①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관련 규정을 따르고, 관련 규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협의 후 위탁자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경미한 사항은 구두 협의 할 수 있다.

②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,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.

제14조(권리·의무의 양도 금지) 수탁자는 본 협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위탁자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5조(비밀의 유지) 수탁자는 본 협약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 중 보안을 필요로 하는 정보 등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위탁자의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(효력의 발생) 본 협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약서에 날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강원도환동해본부장과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은 협약서 2부를 작성,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5월 13일

국립 강릉원주대학교
총 장 반 선 섭

강 원 도
환동해본부장 변 성 균

반 선 섭

변 성 균